

(가칭)공덕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	
번 호	22-72

제출년월일 : 2022. 9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‘공덕 행복주택’ 지역 편의시설 내 신규 설치 예정인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하여 역량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: (가칭)공덕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사무

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1) 추진근거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시행규칙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및 제21조의 2(시설의 위탁)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(장애인복지시설 설치) 및 제81조(비용보조)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 (운영의 위탁 등)

2) 추진 필요성

- 사회복지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 선정으로 지역주민에게 전문적인 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 제공
- 지역사회 내외 다양한 네트워크와 서비스 노하우를 구축하고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여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업무 효율성 제고

다.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: (가칭)공덕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

- 1) 주간보호센터의 시설 운영, 인력 운용 및 관리 일체
- 2) 주간보호센터의 시설물, 장비, 물품, 비품 등 일체
- 3) 기타 위탁사무 수행에 수반된 사업 및 운영사무일체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1) 위치: 마포구 공덕동 370-4 일대, 공덕 행복주택 지역편의시설 내 1층
- 2) 규모: 152.42㎡ (위탁시설 면적)

※ 공덕행복주택 건립 개요

- 시 행 자: 서울주택도시공사
- 사업기간: 2019. 07.~2022. 12.

구 분	용적률 (%)	연면적 (㎡)	총 수 (지하/지상)	동 수 (동)	세부내역		
					행복주택	지역편의 시설	근린생활 시설
내 용	164.64	23,217.19	2/12~20	2	20,739.10 (350세대)	2,349.76	128.33

- 부대시설 및 지역편의시설 현황
 - 부대시설: 게스트하우스(26.19㎡), 주민공동시설(36.55㎡), 어린이집(272.03㎡), 경로당(160.70㎡), 작은도서관(183.51㎡)
 - 지역편의시설: 다목적실(473.85㎡), 피트니스(449.08㎡), 열람실(341석, 502.54㎡), 마포구 주간보호시설(152.42㎡) 1층

마. 민간위탁기간: 2023. 2. 1. ~ 2028. 1. 31.(5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: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1) 소요예산: 243,000천원(구비 100%)

2) 산출근거 [2022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참조]

구분	금액(천원)	산출내역	비고
계	243,000		
인건비 운영비	193,950	- 기본인건비 168,950천원(종사자 3명) - 운영비 25,000천원	구비
기능보강 사업비	49,050	- PC, 사무용 가구, 집기비품 등	구비

아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- 1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,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
- 2)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복지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

자. 민간위탁 추진일정

- 1) '22. 9월 : 민간위탁기관 공개모집 계획 수립
- 2) '22. 10월 :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기관 선정
- 3) '22. 11월 : 민간위탁 협약 체결
- 4) '23. 2월 : 위탁 운영 개시

3. 참고사항 : 관계법령

「사회복지사업법」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
-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>

...

-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9. 1. 15.>

「사회복지사업법」 시행규칙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
-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. <개정 2008. 11. 5., 2012. 8. 3., 2019. 6. 12., 2020. 1. 3.>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
-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9. 6. 12.>
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2. 위탁계약기간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-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6. 8. 3.>

「장애인복지법」

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

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,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,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,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

제59조(장애인복지시설 설치)

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..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. 15.>

제81조(비용 보조)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

-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개정 2021.5.6.>
-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5.6.>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5조(운영의 위탁 등)

-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3.20., 2020.12.31.>